

「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7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7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7월 21일

제15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노후되고 협소한 낙산보건진료소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유지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를 2009년 5월 매입하였으나 사적 제336호 선산 낙산리 고분군과 관련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불허됨(문화재청)
- 해평면 낙산리 630-1번지로 변경 신청한 결과 허가되어 구미시 소유지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와 경상북도 소유지 해평면 낙산리 630-1번지를 교환하여 낙산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】

□ 낙산보건진료소 신축 변경 부지

- 토 지 : 1,088m²
- 기준가격 : 16,320천원(공시지가 기준)

【 처분재산 】

□ 낙산보건진료소 신축 당초 부지

- 토 지 : 687m²
- 기준가격 : 8,931천원(공시지가 기준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낙산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확보코자 시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시유지인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39번지 687m² (공시지가 8,931천원)를 처분하고, 도유지인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630-1번지 1,088m²(공시지가 16,320천원)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건은 노후화 되고 협소한 낙산보건진료소의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, 부지교환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낙후된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